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9 선고 2020나681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5. 21.

판 결 선 고 2021. 7. 9.

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10. 27. 선고 2019가단81411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, 피고들과 D 사이에 2019. 5. 8.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, 피고들은 D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19. 5. 9. 접수 제34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3가소233066호 양수금 사건을 제기하였고, 위 사건에서 2013. 10. 17. “D은 원고에게 16,731,379원과 그 중 5,172,790원에 대하여 2013. 5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D은 2019. 5. 9. 피고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19. 5. 8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19. 5. 9. 접수 제34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다. D은 2018. 1. 1.경부터 이 사건 소재지 이후인 2019. 11. 7.경까지 소득세 부과내역 및 납부내역이 없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1, 갑 제2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제1심법원의 구례군, 수원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,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D을 상대로 16,731,379원과 그 중 5,172,7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,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각 1/2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며,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나. 수익자의 악의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

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).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).

피고들은 원고와 D 사이의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, D이 당초 귀농의 목적으로 피고 B를 비롯한 자매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, D의 아들인 피고 C가 다른 자매들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는데, D이 피고들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1/2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이어서,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들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

따라서 D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/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채승원, 판사 박주영, 판사 김수양

별지

목 록

전남 구례군 E 입야 2,991㎡. 끝.

